

# 춘천시 퇴계동 세영리첼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## I 공급개요 및 일정

- 위 치 :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6-2번지 외 3필지 일원
- 공급규모 : 분양주택 총 168세대 (지하1층, 지상16층~24층, 1개동)
- 일정 계획

구 분	일 자	참고사항
• 입주자모집공고	2016. 05. 20(금)	춘천 퇴계동 세영리첼 홈페이지 <a href="http://www.cc-richcell.com">http://www.cc-richcell.com</a>
• 전본주택 개관	2016. 05. 20(금)	춘천시 퇴계동 796-2 세영리첼 모델하우스
• 접수일자	2016. 05. 25(수) [10:00~15:00]	전본주택 방문접수 (인터넷 청약접수 불가)
• 당첨자발표	2016. 05. 25(수) [17:00]	당사 전본주택에 게재
• 동호수발표	2016. 06. 02(목)	당사 전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

※ 위 일정은 임부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II 특별공급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(2016.05.20 금) 현재 '무주택세대구성원[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]'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.
-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정의  
-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①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, ②(세대주

및 세대원 중)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,  
① + ② 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.

(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 참조)

→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국민주택등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.(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)

※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신지체인·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

※ 세대원 기준

세대주(신청자)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[세대주(신청자)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(신청자)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]

### 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.
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
### ■ 행정사항

-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,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·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제결 불가합니다. 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난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)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1번 (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)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 · 호배정) 및 계약불가]

### III

### 신청시 구비서류

-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05.20)이후 발급분에 한함
-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

-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
-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(각 1통)

해당서류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일에 신청장소(결본주택)에 비치</li> </ul>
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기관장의 추천 명단 미 포함자 신청 불가</li> <li>•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</li> </ul>
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은 제외 (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<a href="http://www.ap2you.com">www.ap2you.com</a> 에서 발급가능)</li> </ul>
주민등록표등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</li> </ul>
무주택 입증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</li> </ul>
가족관계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</li> </ul>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인 신청서는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제출, 배우자 신청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제출</li> </ul>
인감도장,인감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</li> </ul>

■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

구비서류	비 고
위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[양식은 (결본주택)에 비치]</li> </ul>
신청자 인감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</li> </ul>
신청자 인감도장	
대리신청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) 또는 여권</li> </ul>

## IV

## 유의사항
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[2016.5.25(수)예정]에 분양사무실 (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96-2 세영리첼 견본주택)에서 신청접수처 없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.
-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·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시정기관(금융결제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.(미신청 · 미계약 동 ·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)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된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.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6.05.20(금) 광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,
-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,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(http://www.cc-richell.com)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주자모집공고일 (2016.05.20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춘천시 퇴계동 세영리첼 기관추천 특별공급  
배정내역 및 추천양식**

**■ 배정내역**

타입	세대별 공급면적(m <sup>2</sup> )			배정호수	비고
	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	
72	72.7940	24.7092	97.5032	16	
계				16	

※ 통상 주택평형은 세대별 공급면적(m<sup>2</sup>)×0.3025로 산출

※ 일반 특별공급은 해당 주전기관별로 추천세대를 별도로 정하지 않함.

**■ 추천양식**

타입	연번	성명	주민등록 번호	주소	연락처 (휴대폰)
72					
소계					